
2023년 5월
종교인소득신고 워크숍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소득신고

일 시	2023. 5. 8(월) 오후 2시 ~ 오후 5시
장 소	서울시공익활동공간 삼각지 + 유튜브 스트리밍(1부 한정)
대 상	소득신고를 준비 중인 목회자 및 교회재정 담당자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 **자정건강성** 운동

- 홈페이지: www.cfan.or.kr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fan05>
-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일대로 428, 500호
 공익경영센터(NPOpia)
- 전화: 02-6951-1391, 팩스: 0505-231-2481
- 이메일: cfan0510@gmail.com
-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FAN_TV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소개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경영연구원,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재단법인 한빛누리가 2005년 한국교회의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온전한 교회로서의 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결성한 연대단체입니다. 현재 실행위원장은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사무국장은 이현주 목사(교회개혁실천연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워크숍 개최 목적

올해로 종교인소득과세 시행 6년 차가 되었습니다. 전문 세무인력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큰 규모의 교회와 달리 직접 신고를 수행해야 하는 소규모 교회의 목회자는 날선 종교인소득신고가 부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의 종교인소득신고와 납세 절차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종교인소득신고 기간인 5월을 맞아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소득신고”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김찬성 목사(주뜻교회)가 종교인소득신고에 대한 현장 목회자의 노력과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이어 최호윤 회계사의 종교인소득신고 강의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이번 워크숍에는 회계사들의 도움 아래 오프라인 참가 목회자가 직접 자신의 소득신고를 흠택스를 통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2023년 5월 종교인소득신고 워크숍
“아직도 어려운! 종교인소득신고”

14:00 ~ 14:25		발표_ 종교인소득신고, 현장 목회자의 이야기	김찬성 목사 *주뜻교회(진주)
14:25 ~ 15:35	1부	강의_ 종교인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최호윤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대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15:35 ~ 16:00		대담	김찬성 목사, 최호윤 회계사, & 이현주 목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국장
16:00 ~ 16:10	휴식		
16:00 ~ 17:00	2부	직접 해보는 '종교인 소득신고 워크숍'	최호윤 회계사, 김수일 회계사, 김석희 회계사 (회계법인 더함)

- * 1부 행사는 교회재정건강성 운동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CFAN_TV
- * 오프라인 참석자는 개인 노트북과 사전 공지된 소득신고 자료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현장 목회자의 이야기 김찬성 목사(주뜻교회)

1. 2018년부터 시작된 종교인소득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 경남 진주에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이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있었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또 컴퓨터를 다루는 것에 매우 익숙해서 흠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인가? 종교인소득 신고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면서 주변 목사님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중의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왜, 해야 하는데?”였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교회현장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왜?’라는 당위성의 문제였습니다. 이 ‘왜?’라는 질문이 던져지는 이유는 뉴스나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국세청으로 상징되는 파란 박스의 세무조사와 연관되어 진다고 보입니다.

2. 명확하지 않은 수입과 지출

규모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교회일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단, 그리고 제가 속해서 현재 노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 형편에서 말씀드리면 현재 노회 소속 교회가 40개인데 이중에서 절반에 가까운 교회는 미자립 상태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미자립 상태라는 것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어떤 규모적인 형편이 있어서 규모 있게 교회 살림을 살아가기보다는 매주 형편에 맞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보면 주일 현금으로 바로바로 계수한 후에 바로 현금으로 지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상담하는 경우에는 목사님들 개인적으로 사례금(급여)

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더구나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후원금을 목사님 개인통장으로 받아 바로 사용하시기에 교회가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사례금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더해서 목사님에 대한 사례가 월고정액으로 고정 주간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다 보니 종교인소득을 신고하기 위해서 소득 금액을 잡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모호한 지급 금액입니다. 한국 교회는 많은 경우 목회자, 특히 별히 담임목회자에 대해서 별도로 지급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목회활동비는 빼더라도, 사택관리비, 유류비, 통신비, 심지어 염장비까지... 그러다 보니 어디까지 종교인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세무당국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소득 항목이지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이것을 소득으로 보지 않기에...

종교인 소득 신고를 가기 위해 첫걸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 멀고도 험한 홈택스

이렇게 종교인소득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막상 신고를 하려고 해도 부딪히게 되는 것은 세금 신고 방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2년인 가부터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홈택스로 신고를 해서 그나마 수월하게 신고를 시작하게 되었지만, 처음 2018년에 처음으로 종교인 소득을 신고할 때에 뭔 경고 메시지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렇다고 잘 몰라서 세무서에 직접 가서 하려면 세무서 직원이 대충 안내해 주고 “되었어요 가세요” 하니... 누구는 이렇게 했다, 어느 세무서는 뭐 준비해오라고 했다...

이번에도 오기 전에 두 분 목사님의 세금 신고를 도와드리고 왔는데, 여전히 어려운 것은 기부금 항목에서 소득에 따른 한계가 있어서 그 금액을 맞추어서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서 간편하게 하는데 종교인 소득은 꼭 기부처에서 입력한 금액도 틱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5세가 넘어 연금소득이 있으신 분은 모두 채움신고로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지인 목사님 세금 신고를 가장 빠르게 같이 하면서 그 과정을 하나하나 화면을 캡쳐해서 매년 설명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지요. 물어보지 말고 보고 하나씩 따라 하시라고...

그래서 2월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방식을, 5월에는 종교인소득 신고 제출 방식을 PDF 파일로 만들어 노회 목사님, 주변 목사님들과 나누고 SNS에 공유하고 있습니다.

4. 세금 신고로 인한 혜택?

일단 저는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세금을 내고 난 금액을 현금하기에 다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말하면 세상에 다른 부분들도 이중 과세가 되는 부분들이 모두 있지요.

요즘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내면서 받는 혜택이 제법 크지요. 그래서 개척교회를 10년 넘게 지켜오면서, 특별히 지난달 가스 요금은 고지서를 받고 보니 부가세만 냈지요. 거기에 아이 둘을 공부시키면서 이런저런 혜택을 본 면이 많습니다.

5. 그러나 아직 여전히...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종교인 소득 신고가 더 활발히 진행되기 위해서는 교회 재정에 대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홈택스 안내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지만 이전에 홈택스에 연결해서 직접 하다가 궁금해서 126번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상담사들 조차 매뉴얼이 없는지 혼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1인 목회자만 있는 경우 직장으로 전환하면 교회가 50% 납입 의무가 발생하기에 교회에 또 다른 재정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가 납세 담당이기에 100% 다 내야 해서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부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교회가 50%를 납입해 주기에 매우 좋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라도 납입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같은 경우 가입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많기에 장점이 됩니다.

같은 경우에 2월 지급명세서 여태까지 꼭 교회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을 해서 신청해야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연히 노회 다른 목사님이 해보시고 알려주셔서, 다른 분을 해보면서 알게 되었는데 대표자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신고해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습득하는 체질이라 이제야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교역자에 대한 연계성입니다. 이게 당해 연도 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2월에 교회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있는데, 이게 이미 연말에 사임한 교역자에 대해 교회에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교역자는 5월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인 소득신고 어렵지 않아요

최호윤 회계사(회계법인 더함,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 최호윤 회계사의 강의 자료는 [홈택스 종교인소득신고] 화면을 캡쳐하여 삽입한 파워포인트(PPT) 페이지입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중계 영상(혹은 추후 업로드 될 강의 동영상)과 함께 보시면 소득신고를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본 페이지 아래 첨부된 페이지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인소득세 신고

(2023. 05. 08)

교회재정건강성운동

1

소득분류 체계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 재정 건강성 운동

종합소득

퇴직소득
(은퇴)

양도소득
(자산 양도)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 급료 · 보수 · 세비 · 임금 · 상여 ·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 (26호)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일반사항

● 신고 대상자

- ① 소속 교회에서만 급여를 수령한 경우
 - 교회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
 - 교회가 연말 정산을 안 한 경우
 - 연말정산시 누락된 정보가 있어 세금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
- ② 소속 교회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급여, 강의, 원고, 임대소득 등)

● 신고 방식

- ① 흠택스 작성 & 전자 접수 or
- ② 서면 작성 & 방문/우편 접수

● 신고와 납부 기한

- 소득세: ~5월 31일
- 지방소득세: ~5월 31일(소득세 신고시 같이 진행)

3

3

일반사항 - 공제대상 부양가족

(공통)소득금액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 연금소득금액도 포함)

- **배우자공제(150만원)**
- **부양가족공제(150만원)** :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 **직계촌속**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이 아님
 - **위탁아동** : 만 20세 미만
- **경로우대공제(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만 70세 이상
(공제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상황에 의해 공제대상 판단)
- **장애인 공제(200만원)** :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
 - ①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내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부녀자공제(50만원)**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으로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
 - ① 배우자 있는 여성근로자
 - ② 배우자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한부모공제(100만원)** : 배우자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4

일반사항 – 과세 체계(구조)

과 세 체 계		근로 소득	종교인(기타) 소득
● 총수입금액 (=수령액 - 비과세소득)	▶ 차감)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2~70%)	필요경비(20~80%)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공제	인적 공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50 추가공제(경로100, 장애인200 등)	
	국민연금 공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전액)	
	특별 공제	건강, 고용보험료(전액) 주택자금(300~1,800만원한도)	X X
	조특	신용카드 등, 장기펀드 저축액	X
	법	창업투자, 개인연금저축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6~45%)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 74만원)		X
	자녀 (1명:15만원, 2명:30만원, 3명:60만원)		
	연금개좌(12%, 400만원)		
특별 공제	보험료(100), 의료비(700), 교육비 기부금(특례, 일반, 정치)		X
	표준세액공제	(13만원)	(7만원)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5

5

비과세소득

근로소득	종교인(기타)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12 3호, 시행령 §11, §12, §17의2) <p>▶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납입할 금액 한도) ▶ 제공 받은 식사 or 월 20만원 이하 식대 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1/1기준 6세 이하 자녀 대상) ▶ '교회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사회보험료 ▶ 실비 변상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 숙직비, 여비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특수한 역무에 종사자가 해당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회'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주택을 무상 사용 연간 70만원 이하의 '단체순수보장성보험과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법 §12 5호 아목 시행령 §19조 <p>▶ 업무관련 본인 학자금(납입할 금액 한도) ▶ 제공 받은 식사 or 월 20만원 이하 식대 보조금 ▶ 월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 수당 (1/1기준 6세 이하 자녀 대상) ▶ ???(X) ▶ 실비 변상적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직, 숙직비, 여비 자가운전 실 경비 정산액(월 20만원) 종교의식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 활동에 통상 사용하는 의복 및 그 밖의 물품 지급기준에 따라 종교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품 ▶ 교회'소유' 또는 '직접 임차'한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X) </p>

6

6

비과세소득

Q) 목회자가 교회로부터 받는 모든 금액이 과세대상인지?

A) 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이거나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아님

Q) 법정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용자 부담금**을 교회가 납부하는 금액?
(교회가 부담한 50%금액의 혜택을 본인이 누리는 효과)

A) 교회가 부담하는 법정 부담금이기에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Q) 법정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개인부담분**을 교회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A) 개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교회가 대신 납부하는 금액은 본인 소득에 해당함

Q) 교회가 납부하는 **교단연금 보험료**?

A) 교단연금은 공적연금이 아니므로 목회자가 가입한 일반 금융상품에 납부할 불입금을 교회가 대신 납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과세소득에 해당함

7

7

비과세소득

Q) 매월 실제 지출한 목회 도서비, 목회 심방비를 정산하여 지급?

A) 목회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목회자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Q)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목회 도서비, 목회 심방비?

A) 목회활동과 관련성이 있고,
도서가 교회의 도서로 분류되며,
교회가 정한 규정과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Q) 노트북을 구입하여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A) 교회 재산으로 관리되면 소득에 해당하지 않지만
목회자 개인 소유로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소득에 해당함

Q) 목회자 개인소유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비용을 정산 받는 경우?

A) 교회가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한도내에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함

8

비과세소득

Q) 목회자 명의로 임차한 주택 월세(또는 차입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회가 지급하는 경우?

A) 과세 소득에 해당함

Q) 교회가 임차한 주택의 관리비용을 교회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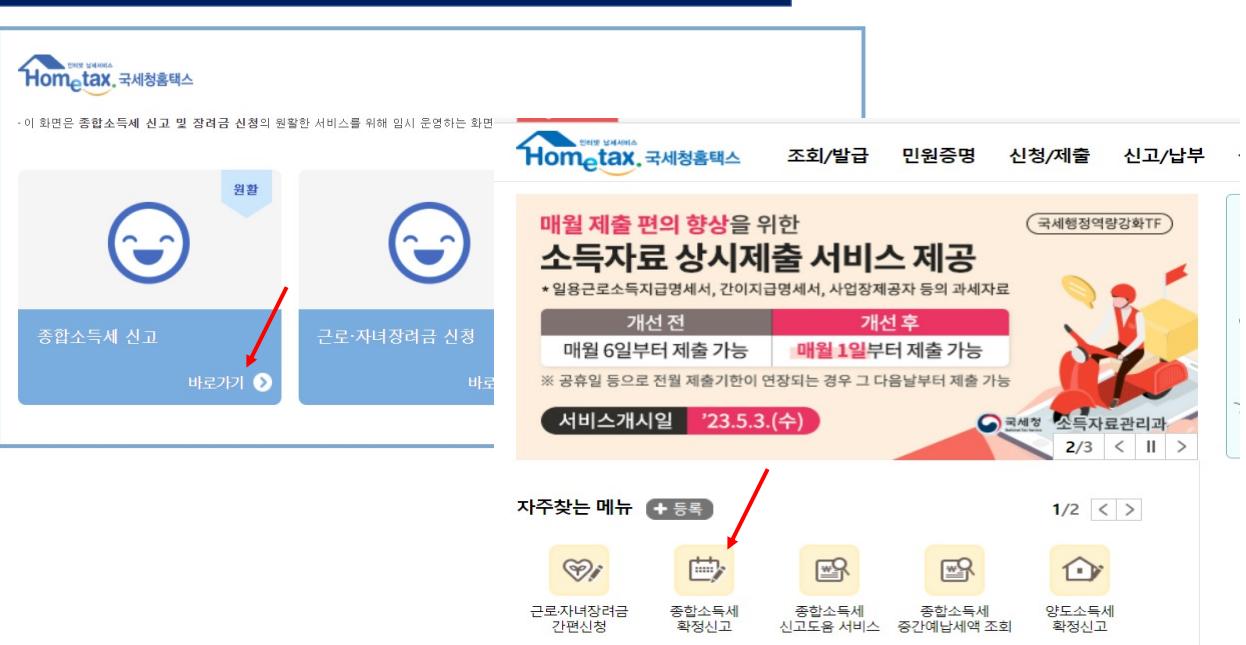
A) 과세 소득에 해당함

Q) 목회자 자녀 학자금을 목회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A) 자녀 학자금은 과세 소득에 해당함

단,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선정한 학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과세 소득이 아님

홈택스 신고 (www.hometax.go.kr)



이 화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잠려금 신청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매월 제출 편의 향상을 위한
소득자료 상시제출 서비스 제공

개선 전
매월 6일부터 제출 가능
개선 후
매월 1일부터 제출 가능

※ 공휴일 등으로 전월 제출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제출 가능

서비스개시일: '23.5.3.(수)'

자주찾는 메뉴: [+ 등록](#)

기능 아이콘: [근로자녀장려금 간편신청](#) (Yellow heart icon),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Yellow document icon),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Yellow document icon),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Yellow document icon),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Yellow house icon)

홈택스 신고 (www.hometax.go.kr)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용자인증 선택

로그인 후 사용자인증 → 무시해도 신고할 수는 있음



사용자인증 방법을 선택하세요.

공동 금융인증서, 신용카드, 휴대전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추가인증

홈택스 제공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세청에서 보유한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자동채움 내역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 정보에 대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 지문인증, 본인 명의의 공동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해 인증할 수 있고, 추가인증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채움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수 있습니다.



11

11

홈택스 신고 (www.hometax.go.kr)

Church Financial Accountability Network
교회재정건강성운동

● 소득자료 파악(확인) ← 본인 인증되어야만 조회 됨

- ① 좌측 상단 **My홈택스** 버튼을 클릭
- ② 좌측 리스트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 클릭



연말정산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기록년도	전체선택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한번에 내려받기	연세/하자받기	제공동의 연결
2022년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한번에 내려받기"/>	<input type="button" value="연세/하자받기"/>	<input type="button" value="제공동의 연결"/>						
국민보건 (National Health Insurance)	<input type="button" value="Q"/>									
국민연금 (National Pension)	<input type="button" value="Q"/>									
보험료 (Insurance)	<input type="button" value="Q"/>									
의료비 (Medical Expenses)	<input type="button" value="Q"/>									
교육비 (Education Expenses)	<input type="button" value="Q"/>									
신용카드 (Credit Card)	<input type="button" value="Q"/>									
직불카드 등 (Debit Card)	<input type="button" value="Q"/>									
현금수수증 (Cash Receipt)	<input type="button" value="Q"/>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증명서용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임으로 고체요건은 근로자기 확인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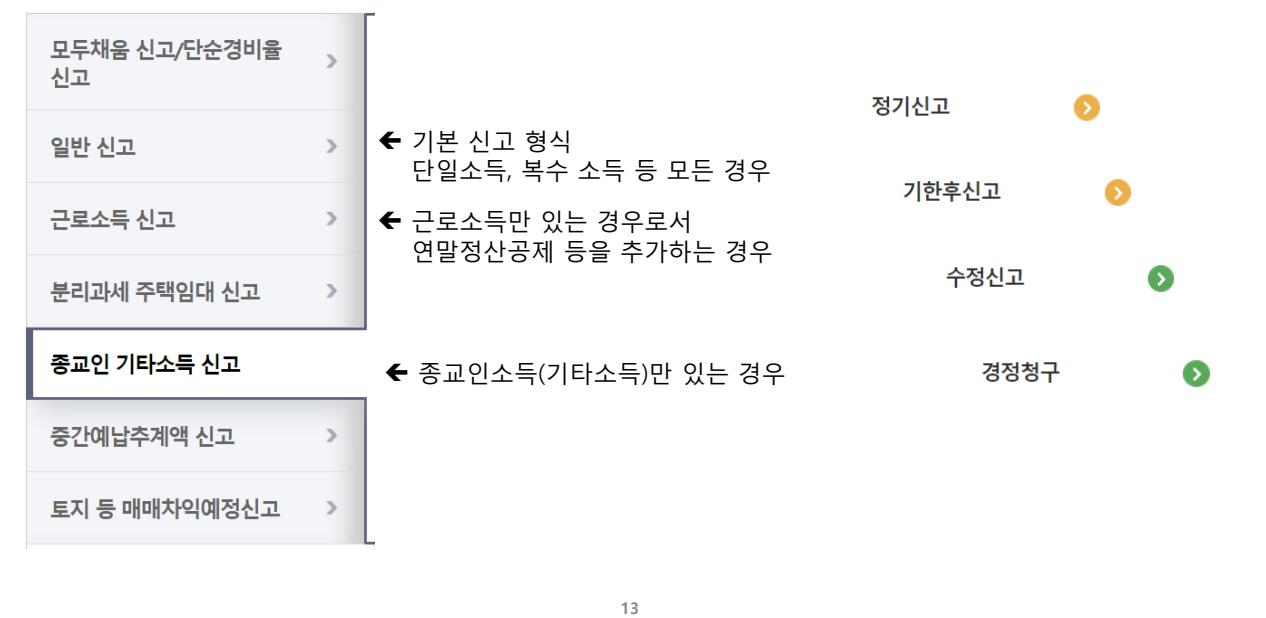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기록년도	지급명세서 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일자	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보기	신고방법
2022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	129-86-60259	2023-04-26	주식회사 유스바瞌개비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방문(서면)
2022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	301-82-14612	2023-04-17	사단법인 한국회계정책...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방문(서면)
2022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	582-82-00226	2023-04-12	재단법인 금융산업공익...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방문(서면)
2022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	102-83-02025	2023-02-28	행정안전부	<input type="button" value="보기"/>	홈택스(전자파일)

12

12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13

1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아무런 신고가 안된 경우

The screenshot shows the tax reporting system interface. On the left, a sidebar lists reporting categories:

- 신고서 작성 |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를 신고
- 일반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분리과세 주택임대 신고
-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On the right, the main form is displayed:

- 메뉴펼침** **메뉴접기**
- 01. 기본사항**
- 02. 종교인소득신고서**
- 03. 신고서제출**
- 전자신고 메뉴얼** **신고안내 동영상** **미리보기**

기본정보 입력

※ 당해 신고서는 신고안내유형이 종교인소득 모두채움 납부-환급(Q,R)이거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작성 가능하오니 그 외의 경우는 일반신고서 등 다른 유형의 신고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귀속년도	2022	주민등록번호	78-XXXX-XXXX	조회
주소	도로명 주소 : 지번 주소 :			
전자메일	@		직접입력	
주소지 전화	-XXXX-XXXX		휴대 전화	-선택- -XXXX-XXXX
거주구분	거주자	내·외국인	내국인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선택

① 조회 클릭
② 주소지 전화 or 핸폰 번호 입력
③ 저장 후 다음 이동

저장 후 다음이동

14

14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① 종교인소득신고서 입력

※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 후 입력내용 저장을 하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클릭하세요.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교회	613-82-[redacted]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종교인소득명세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 이상 입력 불가함)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종교단체명		[redacted] 교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13-82-[redacted]	확인		
수입금액		54,000,00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redacted] 교회	613-82-[redacted]	54,000,000	0
(76) 총수입금액		54,000,000	(77) 필요경비	30,200,000	(78) 소득금액
					23,800,000
닫기					
적용하기					

15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②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종교인소득명세 도움말				
NO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1	[redacted] 교회	613-82-[redacted]	54,000,000	0

③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구 분		금 액
(31) 총수입금액 : 종교인소득 명세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적습니다.		54,000,000 원
(32) 필요경비 : 필요경비 금액을 적습니다.		30,200,000 원
(33) 종합소득금액 : (31) - (32)		23,800,000 원
(34) 소득공제 : ((35) ~ (45))의 합계에서 (46)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		10,200,000 원

④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해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N"/>	<input type="button" value="N"/>	<input type="button" value="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button" value="내국인"/>

종교인소득명세

* 종교인소득명세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 동일한 종교단체에 퇴단후 재입단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등을 합해서 1건으로 입력합니다.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는 2건 이상 입력 불가함)

종교인소득명세자료 입력					
종교단체명		[redacted] 교회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613-82-[redacted]	확인		
수입금액		54,000,000	원천징수세액	0	
등록하기					

선택내용 수정					
□	일련번호	종교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수입금액	원천징수세액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redacted] 교회	613-82-[redacted]	54,000,000	0
(76) 총수입금액		54,000,000	(77) 필요경비	30,200,000	(78) 소득금액
					23,800,000
닫기					
적용하기					

16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인적공제

※ 인적공제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삭제 후 추가입력해 주세요.
※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인적공제 합계가 자동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해당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추가		선택내용삭제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내외국인여부
<input type="checkbox"/>	*****…	장 [REDACTED]	배우자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	최 [REDACTED]	직계비속(자녀,입양자)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N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	[REDACTED]	소득자의 직계존속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Y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0	5. 장애인	1명	2,000,000
2. 배우자	1,500,00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2명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1명	8. 인적공제 계		7,500,000

닫기 입력완료

- 인적공제 대상명세 추가 버튼 클릭하면 줄이 계속 생김
- 클릭하여 공제대상자 가족 인적사항을 기입
- 본인도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
- 기본공제대상, 70세이상여부, 장애인여부 등을 선택
- 하단에 인적공제 금액 자동으로 계산됨
- 입력 완료 버튼 클릭

17

17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인적공제명세 도움말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입력/수정하기
관계명	성명	내외국인코드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본인	임***	1	[REDACTED]*****
배우자	장***	1	[REDACTED]*****
직계비속(자녀,입양자)	최***	1	[REDACTED]*****
소득자의 직계존속	김***	1	[REDACTED]*****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5) 본인	1,500,000 원	(39) 장애인	1 명	2,000,000 원
(36) 배우자	1,500,000 원	(40) 부녀자		0 원
(37) 부양가족	2 명	(41) 한부모가족		0 원
(38) 경로우대자	1 명	인적공제 계(35~41)		9,000,000 원

(42) 기부금(이월분) 소득공제 : 작전 과세년도에 이월된 기부금을 기부금 종류별 공제한도 범위 아래로 계산 하여 입력합니다.

(43)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적습니다.

(44)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에 40%를 감한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

(45) 증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공제

(46) 소득공제 등 종합한도 조과액

(47) 과세표준 : (33) - (34)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14,800,000 원

(48) 세율 15.0% %

(49) 산증세액 : (47) x (48) - 누진공제액 1,140,000 원

(50) 세액공제 : 세액공제명세 (51 ~ 57)의 합계금액을 적습니다. 276,000 원

← 국민연금 불입액을 기재

← 2000.12.31 이전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Min(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72만원)

18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세액공제명세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1 명 150,000 원
(51) 자녀 세액 공제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240,000 원 36,000 원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 납입액
(53) 기부금세액공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기부금명세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남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838,800 원

19

19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기부금명세서

· 해당연도 기부명세							(단위:원) <input type="checkbox"/> 기부금명세서 불러오기 <input type="checkbox"/>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input type="checkbox"/> 선택내용 삭제	
□ No	기부금 코드	기부내용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대상금액	공체제외 기부금
□ 1	----선택----	<input type="checkbox"/>	...선택...	...선택...		1	0	0 0 0

특례기부금

정치자금

일반기부금(종교단체외)

일반기부금(종교단체)

우리사주조합금

20

20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기부금 한도 계산 사례

➤ 종교인소득 수입금액 54,000,000 (비과세소득제외)	5,400,000
-) 필요경비 30,200,000	
=)종교인소득금액 23,800,000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 금액 범위

- A. 종교인 소득금액의 10% : $23,800,000 * 10\% = 2,380,000$
- B. 아래 두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 1,200,000
- 종교인 소득금액의 20% : $23,800,000 * 20\% = 4,760,000$
 - 종교단체외에 지급한 금액: 1,200,000

기부금 종류별 공제대상 제외금액

- A. 종교단체 기부금: $5,400,000 - 2,380,000 = 3,020,000$
- B. 종교단체외 기부금: $1,200,000 - 1,200,000 = 0$

21

21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기부금명세서

해당연도 기부명세		(단위: 원)									
No	기부금 코드	기부자		기부처		기부내역		공제체외 기부금		기부금합계	
		성명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상호(성명)	건수	공제대상금액	기부장려금	기타	기부금합계		
□ 1	일반기부금_소▼		███████████████	상...	1	1,200,000	0	0	1,200,000		
□ 2	일반기부금_소▼		███████████████	주...	1	5,400,000	0	0	5,400,000		

기부금 내역 중 기부장려금 등 충제 제외 기부금을 입력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을 공제 대상금액에서 차감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연도 기부명세에 임본의 자료는 '기부금' 벌룬 항목에서 '기부금 조정명세'에 자동 인력됩니다.

- ① 해당연도 기부명세 추가 버튼으로 기부금 내역을 등록
(한도초과 여부 고려 안함)
- ② 입력한 금액 하단에 반영 표시됨
- ③ **한도 초과된 금액을 이월금액으로 입력**
- ④ 하단의 등록하기 버튼으로 신고서에 반영

기부금 조정명세		(단위: 원)									
No	기부금 코드	기부년도	기부금액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공제대상금액	해당연도 공제금액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소멸금액	이월금액	
□ 1	일반기부금_소▼	2022▼	1,200,000	0	1,200,000	0	0	1,200,000	0	0	
□ 2	일반기부금_소▼	2022▼	5,400,000	0	5,400,000	0	0	2,380,000	0	3,020,000	

등록하기 닫기

22

22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세액공제명세

(51) 자녀 세액 공제	(51-1) 7세 이상의 기본공제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 2명 이하: 1명당 15만원,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1 명 150,000 원
	(51-2) 출산-입양 자녀 ※ 출산-입양 자녀가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0 명 0 원
(52) 연금계좌세액공제	공제 대상금액	원 0 원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0 원 0 원
(53) 기부금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기부금명세서"/> <input type="button" value="도움말"/>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	3,580,000 원 716,000 원
	우리사주조합 공제 대상금액	0 원 0 원
(54) 표준세액공제		70,000 원
(55) 전자신고세액공제 : 납세자가 전자신고 방법에 의하여 직접 신고하는 경우 2만원을 공제합니다.		20,000 원
(56)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0 원
	10만원 초과	0 원
(57) 외국납부세액공제 <input type="button" value="계산기"/>		0 원
(58) 결정세액 : (49) - (50)("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합니다.)		4,000 원
(59) 가산세액 : 무신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세액명세(60) ~ (62)의 합계 금액을 적습니다.		0 원
		23

2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가산세액 계산명세

구 분		계산기준	기준금액	가산세율	가산세액	가산세 감면 도움말
(60) 무신고 김연을 계산	부정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원	40/100	0 원	
	일반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	0 원	20/100	0 원	
(61) 과소신고 김연을 계산	부정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원	40/100	0 원	
	일반과소신고	과소신고납부세액	0 원	10/100	0 원	
(62) 납부지연 계산기 계산내역삭제	미납일수	0 일	22/100,000	0 원	0 원	
	미납부(환급)세액	0 원				
(63) 총결정세액 : (58) + (59)					4,000 원	
기납부 세 액	(64) 원천징수세액				0 원	
(65)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 : (63) - (64)					4,000 원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블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0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위의 내용을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위 내용 중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의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에 동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전						
신고서 작성완료						

24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근로소득으로 신고 (소득세 신고한 자료가 없는 경우)

25

25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

일반 신고

정기신고

기본정보 입력

전자신고 매뉴얼 신고안내 동영상

- 신고자의 정보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를 클릭후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클릭하세요.
- 휴대전화,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세요.
- 신고서 작성 중 연말정산 내역을 다시 불러와야 하는 경우 : 「새로작성하기」버튼 클릭 → 「확인」클릭 → <주민등록번호> 옆 「조회」클릭 → 「연말정산 불러오기」클릭
※ 이때, 작성중이던 신고서는 초기화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사항

새로작성하기 신고서 불러오기

귀속년도	2022	주민등록번호	■■■■■ - ■■■■■	조회	성명	■■■■■
연말정산 불러오기 ※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주소	경기도 ■■■■■	경기도 ■■■■■				
* 주소지전화	■■■ - ■■■ - ■■■	* 휴대전화	010	▼	6	■■■■■
전자메일	■■■■■@■■■■■	직접입력	▼			
* 세대주 여부	Y	* 내·외국인	내국인	▼		
* 거주구분	거주자	*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26

26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 근무지별 소득명세

※ 종전 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여 근무처별 급여 등 소득을 작성하고 아래 <(21)총급여> 항목에 급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종교인소득은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세요.

근무처별 소득공제 도움말

입력/수정하기

NO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인정상여 등	계
----	------	---------	----	----	--------	---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 글로소들을 통해 신고하는 출교인소들을 하단의 「선택내용수정」을 클릭하여 <소통구분> 코드를 58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구분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9.근무처명	교회		
10.사업자등록번호	613-	82-	확인
13.급여	54,000,000		14.상여
15.인정상여	0		15-1.주식매수선택권행사이의
15-2.우리사주조합 인출금	0		15-3.기타소득계(임월퇴직소득금액한도초과액 및 직무발명보상금)
16.계	54,000,000		월천정수영수증상결정세액 소득세

등록하기

소득구분	근무처명	사업자등록번호	급여	상여	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input checked="" type="checkbox"/>	58 [REDACTED]교회	613-82 [REDACTED]	54,000,000	0	54,000,000	0	0

달기 적용하기

27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21. 총급여	54,000,000	22. 근로소득공제	12,450,000	23. 근로소득금액	41,550,000
② 인적공제 명세					
※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입력/수정하기
24. 본인	1,500,000	28. 장애인	0 명		0
25. 배우자	0	29. 부녀자			0
26. 부양가족	0 명	30. 한부모가족			0
27. 경로우대	0 명	0 소계			1,500,000

인접공제

▪ 인적공제 입력

불양가족의 기본공제 이전공제 할증 인력

주민등록번호

성명

* 주민등록번호	11- <input type="text" value="*****"/>	확인	성명	<input type="text"/>	인
*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 관계	<input type="text" value="배우자"/>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입니다?
(예) 인 경우 '기본공제 해당자', '아니오'인 경우 '기본공제 미 해당자'가 선택됩니다.)

2 부약가족이 잠에의 입니까

○ 예 ○ 아니오

문답내용 적용하기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인적공제 입력								추가입력			
주민등록번호	-	확인	성명	내·외국인		내국인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관계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등록하기											
인적공제 대상자명세								선택내용수정	선택내용삭제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성별 (남:01, 여:02)	나이	외국인	
1-1****	[REDACTED]	소득자 본인	Y	N	N	N	N	01	44	N	
1-2****	[REDACTED]	배우자	Y	N	N	N	N	02	58	N	
1-3****	[REDACTED]	직계비속(…)	Y	N	N	N	N	02	17	N	
1-4****	[REDACTED]	소득자의 …	Y	Y	Y	N	N	02	87	N	
구분		금액	구분		금액						
1. 본인		1,500,000	5. 장애인		1명	2,000,000					
2. 배우자		1,500,000	6. 부녀자			0					
3. 부양가족	2명	3,000,000	7. 한부모가족			0					
4. 70세 이상인 자	1명	1,000,000	8. 기타고객(…)			0					
닫기 입력 인적공제 명세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사항을 추가 또는 삭제를 해야 할 경우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명세 도움말 입력/수정하기											
24. 본인		1,500,000	28. 장애인		1 명	2,000,000					
25. 배우자		1,500,000	29. 부녀자			0					
26. 부양가족	2 명	3,000,000	30. 한부모가족			0					
27. 경로우대	1 명	1,000,000	소계			9,000,000					

29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기타 및 특별공제 명세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도움말	31. 국민연금보험료공제	0								
32. 공무원연금	0	32. 공무원연금	0								
군인연금	0	군인연금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별정우체국연금	0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계산하기	33.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포함)	0								
고용보험료	0	고용보험료	0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계산하기	34.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대출기관	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거주자	0								
(단위: 원)											
보험료(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공제 계산기											
도움말 복구하기											
* 귀속년도				전체선택				선택해제			
2022				<input type="checkbox"/> 1월 <input type="checkbox"/> 2월 <input type="checkbox"/> 3월 <input type="checkbox"/> 4월 <input type="checkbox"/> 5월 <input type="checkbox"/> 6월				<input type="checkbox"/> 7월 <input type="checkbox"/> 8월 <input type="checkbox"/> 9월 <input type="checkbox"/> 10월 <input type="checkbox"/> 11월 <input type="checkbox"/> 12월			
복구하기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960,00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0			
③ 소계(① + ②)								960,000			
공제대상금액								960,000			
소득공제액								960,00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①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입 ② 하단의 계산하기 버튼 클릭 ③ 하단의 적용하기 버튼 클릭											
35. 기부금(이월분)								0			
36. 특별소득공제 계(33+ ~ 35)								0			
37. 차감소득금액								32,550,000			

30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① 그 밖의 소득공제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3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0	4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계산하기	
3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0	4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도움말	
40. 주택마련저축 계산하기 도움말	0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4년 기숙까지 해당)	
청약저축	0		
주택청약종합저축	0	44.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도움말	
근로자주택마련저축	0	45.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도움말	
41. 투자조합출자 등 계산하기 도움말	0	46.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47. 그 밖의 소득공제 계	

주택마련저축 계산기

도움말 펼치기

(단위: 원) 계산하기

구분	가입일자	납입금액	공제금액
청약저축	○2015.1.1.이후 가입 ◎2014.12.31.이전 가입	600,000	240,000
주택청약종합저축	○2015.1.1.이후 가입 ○2014.12.31.이전 가입	0	0
근로자주택 마련저축		0	0
합계		600,000	240,000

적용하기 닫기

31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단위: 원)

구분	금액
48.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도움말	0
49. 종합소득 과세표준	30,150,000
50. 산출세액	3,442,500

③ 세액감면

(단위: 원)

구분	금액	구분	금액
51. 소득세법상 세액감면(제59조의 5)	0	54. 조세조약(원어민교사 등)	0
52.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18조 외)	0	55. 세액감면 계	0
53.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제30조)	0		

32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세액공제		(단위: 원)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화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화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6. 근로소득		660,000	64. 기부금		0
57. 과세대상자녀 도움말	1 명	150,000	기부금조정명세서		
출산·입양자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0 명	0	64-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64-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64-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 1호의 기부금	0	0
연금계좌 계산하기		0	64-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58. 과학기술인공제		0	64-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 1호의 기부금	0	0
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65. 특별세액공제 계(61+ ~ + 64)	0	0
60. 연금저축		0	66. 표준세액공제 도움말		0
60-1.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 입액		0	67. 납세조합공제		0
61. 보험료 계산하기		0	68. 주택차입금 도움말		0
일반 보장성		0	69. 외국납부 도움말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70.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0	0
62. 의료비 계산하기		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63. 교육비 계산하기		0	71. 세액공제 계		820,000

보험료 공제 계산기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1,300,00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③ 소계 (① + ②)	1,300,000
공제대상금액	1,000,000
세액공제액	120,00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① 납입한 보험료 금액 기입

② 계산하기 클릭

③ 적용하기 클릭해서 신고서에 반영

33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의료비 공제 계산기

의료비 공제 계산기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① 총 급여	54,000,000	
②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0	
③ 난임시술비	0	
④ 미숙아·선천성이상아	0	
⑤ 그 밖의 공제대상자 의료비	0	
⑥ 실손의료보험금(본인)	0	
⑦ 실손의료보험금(부양가족)	0	
⑧ 소계(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닫기 계산하기 적용하기

교육비 공제 계산기

교육비 공제 계산기		(단위: 원)
구분	지출금액	
소득자 본인	0	
장애인 특수교육비	0	
가족 1 초중고	0	
가족 2 대학생	0	
소득자본인 공제대상금액	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액	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34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기부금조정명세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			
* 기부유형	일반기부금_소득세별	* 기부연도	2022
13. 기부금 합계금액	1,200,000	*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1,2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1,2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 해당연도 세액공제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등록하기		취소하기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			
* 기부유형	일반기부금_소득세별	* 기부연도	2022
13. 기부금 합계금액	5,400,000	*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5,4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5,4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4,155,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1,245,000
등록하기		취소하기	

35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 물려오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NO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14. 기부금액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8. 공제대상금액 (14-17)	해당연도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않는 금액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소멸금액
1	40	2022	1,200,000	0	1,200,000	0	0	1,200,000	0
2	41	2022	5,400,000	0	5,400,000	0	0	4,155,000	1,245,000

총합소득금액	41,550,000				
기부금 한도액					
구분	필요경비	소득·세액 공제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 치 자 금 10만원 이하	0	41,550,000	0	0	0
정 치 자 금 10만원 초과	0	41,550,00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이월)	0	41,550,00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당해)	0	41,550,000	0	0	0
우 리 사 주 조 합 기부금	0	12,465,00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이월)	0	5,355,00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당해)	0	5,355,000	0	0	1,200,00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이월)	0	5,355,000	0	0	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당해)	0	5,355,000	0	0	4,155,000

36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세액공제

※ 전자신고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결정세액과 1만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합니다.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구분	공제대상금액	금액
56. 근로소득		660,000	64. 기부금		
57. 과제대상자녀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1 명	150,000	기부금조정명세서		1,071,000
출산·입양자	<input type="checkbox"/> 첫째 <input type="checkbox"/> 둘째 <input type="checkbox"/> 셋째이상 <input type="checkbox"/> 0 명	0	64-1.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이하)	0	0
			64-2.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초과)	0	0
			64-3.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0	0
연금계좌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0	0	64-4. 우리사주조합기부금	0	0
58. 과학기술인공제		0	64-5.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	5,355,000	1,071,000
5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0	65. 특별세액공제 (61+ ~ + 64)	6,355,000	1,191,000
60. 연금저축		0	66. 표준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60-1. ISA만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0	67. 납세조합공제		0
61. 보험료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1,000,000	120,000	68. 주택차입금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일반 보장성	1,000,000	120,000	69. 외국납부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장애인 전용 보장성	0	0	70. 월세액 세액공제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0
62. 의료비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0	0	전자신고세액공제		10,000
63. 교육비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0	0	71. 세액공제 계		2,011,000

37

근로소득으로 신고: 무 제출 경우

납부(환급)세액

※ 아래의 「75.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은 당해화면 상단 균무지별 소득명세 오른쪽 [입력/수정하기]를 클릭후 「원천징수영수증상결정세액소득세」 항목에 서 입력합니다.

※ 개인자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72. 결정세액(50-55-71)	1,431,500	0
73.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0	0
74. 차감납부할 세액(72-73)	1,431,500	0
75. 납부특별세액차감	0	
납부특별세액가산	0	
76.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0	0
77. 신고기한내 납부세액	1,431,500	0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산세 부과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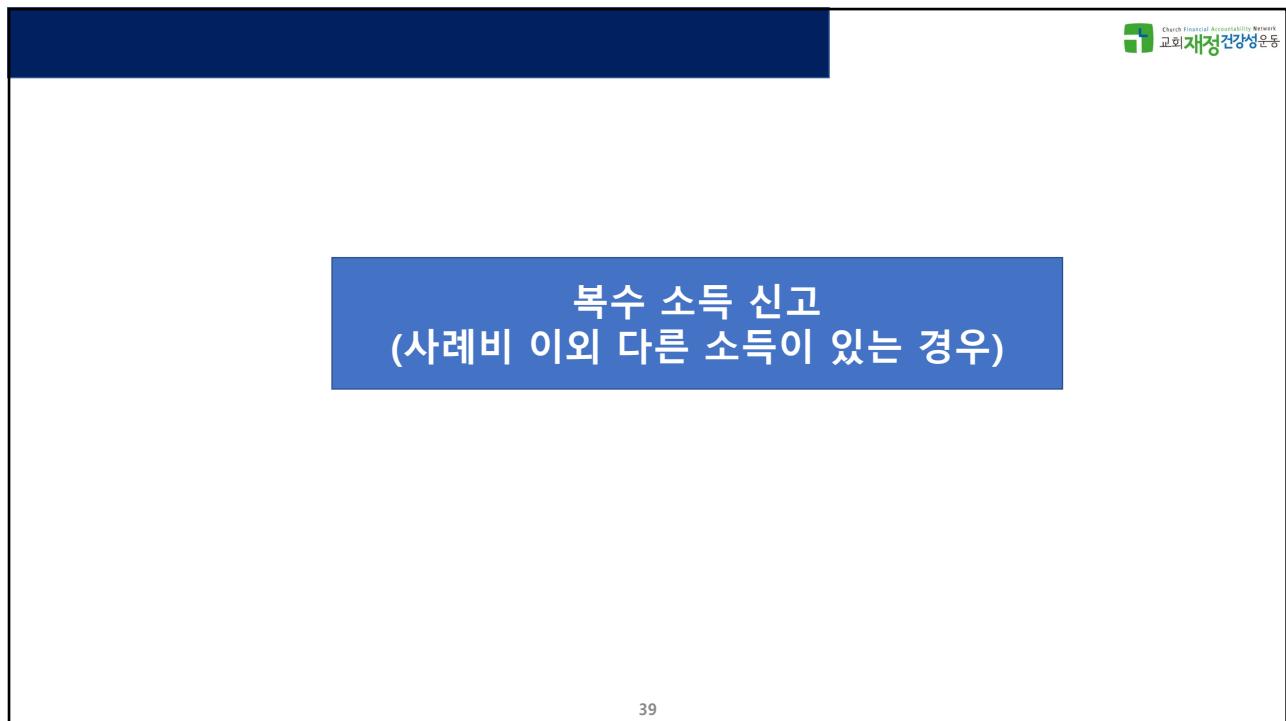
이에 동의합니다.

이전

제출화면으로 이동

58

38



39

39

40

40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➁ 기본정보 입력

- 원쪽 메뉴 순서대로 입력하면 계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반드시 팁업을 허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➂ 기본사항

전자신고 매뉴얼 화면도움말

새로작성하기 신고서불러오기

＊ 개인단체 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개인 <input type="radio"/> 단체(종종)	＊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text"/> 9 -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귀속년도	2022	＊ 주소지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휴대전화	010 - <input type="text"/> 1	＊ 장애인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 사업장 전화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주소	도로명 주소 : <input type="text"/> **** 지번 주소 : <input type="text"/> ****		
＊ 거주구분	거주자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내·외국인	내국인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 거주지국 KR 대한민국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신고유형	-선택-		비사업자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신고구분	정기(확정) <input type="button" value="선택"/>		분리과세 여부 <input type="radio"/> 여 <input checked="" type="radio"/> 부

➃ 소득종류 선택(복수선택 가능) 나의 소득종류 찾기

* '나의 소득종류 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국세청 보유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소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소득	<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input checked="" type="checkbox"/>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포함)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소득
<input type="checkbox"/> 연금소득	<input type="checkbox"/> 이자소득	<input type="checkbox"/> 배당소득	<input type="checkbox"/> 분리과세(주택임대, 기타소득)

저장 후 다음이동

41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➁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소득의 지급자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⑤ - ⑥)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상호 (성명)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선택-

-선택-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미국근 근로소득 52

국외 근로소득 53

납세조합 가입자 근로소득 5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근로소득 56

원천징수의무 없는 근로소득 57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기타소득 60

동업기업에서 배분받은 기타소득 61

연금소득 66

종교인소득 67

④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입력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 소득구분	-선택-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⑤ - ⑥)	도움말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등록하기 닫기

42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입력

※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58,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소득구분> 코드는 67입니다.

소득구분	원천징수의무 있는 국내 근로소득 51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14-82-[REDACTED]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36,000,000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10,650,000
도움말	
소득금액(⑤ - ⑥)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소득구분	근로소득으로 확정신고한 종교인소득 58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13-82-[REDACTED]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28,000,000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2,300,000
도움말	
소득구분	기타소득 60
소득의지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208-82-[REDACTED]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1,000,000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REDACTED]
도움말	
소득금액(⑤ - ⑥)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원천징수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제외)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80,000
원천징수 농어촌특별세	0

43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 근로·기타(종교인)·연금소득 명세서

화면도움말

근로/연금/기타(종교인) 소득 불러오기 **추가입력**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소득의 지급자		⑤총수입금액 (총급여액·총연금액)	⑥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연금소득공제)	소득금액 (⑤ - ⑥)
<input type="checkbox"/>	소득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51	214-82-[REDACTED] (사) 한국 [REDACTED]	36,000,000	12,950,000
<input type="checkbox"/>	58	613-82-[REDACTED] 교회	28,000,000	0
<input type="checkbox"/>	60	208-82-[REDACTED] 사단법인 [REDACTED]	1,000,000	600,00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44

44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

※ 인적공제대상자 명세는 보고서 출력시 최대 8개까지만 표시됩니다.

									전년도 인적공제 불러오기	추가 입력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NO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기본공제	70세이상	장애인	부녀자	현			
□	1	████████-1*****	████***	소득자 본인	Y	N	N	N				

▶ 인적공제 등록

주민등록번호	████████ - ████████	확인	성명	██████████	내국인	내국인
기본공제	<input checked="" type="radio"/> 해당자 <input type="radio"/> 미해당자	관계	소득자 본인			
인적공제항목	<input type="checkbox"/> 70세 이상 <input type="checkbox"/> 부녀자 <input type="checkbox"/> 한부모가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 2016년귀속 부터는 부양가족 중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당해 화면에서 <기본공제>에 미해당자로 체크하여 등록하면 [기부금 몇 조정명세서] 화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하기](#) [닫기](#)

45

45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 기타공제 및 특별공제

구분	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11. 국민연금보험료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1,200,000	46,390,000
12. 기타연금보험료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13.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2,000,000
14. 특별공제_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2,060,000	
15. 특별공제_주택자금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0	
16. 특별공제_기부금(이월분)	0	
17. 특별공제 계(14+ ~ +16)	2,060,000	

구분	지출금액
①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	1,200,000
② 고용보험료 납입금액 (직접 입력)	860,000
③ 소계(① + ②)	2,060,000
공제대상금액	2,060,000
소득공제액	2,060,00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46

46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구분	금액	소득공제 한도액
18. 개인연금저축(2000.12.31. 이전 가입)	480,000	720,000
19.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0	5,000,000
20. 주택마련저축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240,000	2,640,000
2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input type="checkbox"/> 계산하기	0	25,725,000
22.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액 <input type="checkbox"/> 연말정산 간소화 불러오기	0	
23. 우리사주조합 출자금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15,000,000
2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0	15,435,000
25.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10,000,000
26.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2,400,000
27.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0	2,400,000
28. 계(18+ ~ +27)	720,000	

소득공제 합계 및 한도초과액

29. 소득공제 합계(8+11+12+13+17+28)	6,980,000
30.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15+19~23+26-2,500만원) <input type="checkbox"/> 도움말	0

◀ ▶

47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기부금 명세서

※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서 제출한 근로소득분의 기부금명세서를 불러오기 위하여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전 단계에서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했어도 기부금명세서는 별도의 서식으로써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않은 기부금은 조회되지 않으므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후 추가입력 해야 합니다.

기부금 입력대상

※ 해당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장을 선택하고, "선택내용 입력/수정" 버튼을 클릭후 기부금 명세를 입력하세요.

공제구분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소득구분	신고유형	주업종코드
<input type="checkbox"/> 세액(소득) <input type="checkbox"/> 필요경비	■■■■■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				

-전체-
특례기부금_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의 기부금 10
정치자금기부금 20
일반기부금_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외) 40
일반기부금_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의 기부금(종교단체) 4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42

* 유형코드	-전체- <input type="button" value="▼"/>
기부내용	<input type="text"/>
* 기부자 주민등록번호	선택 <input type="button" value="▼"/> <input type="text"/> 기부자 성명 <input type="text"/> 기부자 관계 <input type="text"/>
기부처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 <input type="text"/> 확인 <input type="text"/> 기부처 상호 <input type="text"/>
* 기부내역 건수	<input type="text"/> 기부내역 합계금액 <input type="text"/>
* 공제대상 기부금액	<input type="text"/>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input type="text"/>
기타 기부금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등록하기"/>	

48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기부금(연말정산 간소화) 조회하기] [기부금(당해 및 이월)내역 조회하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코드	기부 내용	기부자			기부처			건수	합계금액
		주민등록번호	성명	관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 40		*****...	***	1	208-82...	사단법인		1	1,200,000
□ 41		*****...	***	1	613-82...	교회		1	5,400,000

※ 당해연도만 조회되며 이월분은 기부금 유형별 합계에서 조회되며, 세액공제로 입력한 자료는 전체가 조회되며 필요경비는 사업장별로 조회됩니다.

▶ 기부금 유형별 합계

기부금 조정명세서

기부금 코드	당해연도							이월분	
	기부자 구분								
	합계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그 외		
총 계	6,600,000	6,600,000	0	0	0	0	0	0	
40	1,200,000	1,200,000	0	0	0	0	0	0	
41	5,400,000	5,400,000	0	0	0	0	0	0	

49

49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 기부금 조정명세 내역

* 기부유형	일반기부금_소득세별	* 기부연도	2022
13. 기부금 합계금액	5,400,000	14. 공제대상 기부금액	5,400,000
15. 기부장려금 신청금액	0	16. 기타 기부금	0
*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0		
18. 공제대상금액(14-17)	5,400,000	* 해당연도 필요경비	0
* 해당연도 소득공제	0	* 해당연도 세액공제 대상금액	5,145,00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소멸금액	0	* 해당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이월금액	255,000

등록하기 취소하기

전년도 기부금조정명세 불러오기 선택내용 수정 선택내용 삭제

□ NO	기부금 코드	기부 연도	14. 기부금액	17. 전년까지 공제된 금액	18. 공제대상금액 (14-17)	해당연도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상금액
□ 1	40	2022	1,200,000	0	1,200,000	0	0	1,200,000
✓ 2	41	2022	5,400,000	0	5,400,000	0	0	5,400,000

- ① 한도 조정할 항목 선택
- ② 선택내용 수정 클릭
- ③ 상단에 표시된 내용중 해당연도 공제금액과 이월금액을 구분하여 입력
- ④ 등록하기 버튼 클릭하여 반영
- ⑤ 하단의 입력완료 버튼 클릭하여 신고서에 반영

입력완료 닫기

50

50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단위:원)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자녀세액기본공제 도움말	0	0	0	
출산·입양 자녀세액공제 도움말	0	0	0	
연금계좌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불리오기	0	0	0	
과학기술인공제				
퇴직연금				
연금저축				
ISA(연기 시 연금 계좌납입액)				
일반 보장성 보험료 연말정산 간소화 불리오기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불리오기				
교육비 연말정산 간소화 불리오기				
특례기부금 도움말				
일반기부금 도움말	6,345,000		1,269,000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 이하 도움말				
정치자금기부금_10만원 초과 도움말				

보험료 공제 계산기

구분	납입금액
① 일반 보장성보험	0
②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0
③ 소계 (① + ②)	0
공제대상금액	0
교육비 불리오기 가족입력 추가 가족입력 삭제	

(단위:원)

구분	지출금액
소득자 본인	
장애인 특수교육비	
기족 1 대학생	
기족 2 취학전 아동	
소득자본인 공제대상금액	0
장애인 특수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
취학전 아동 공제대상금액	0
초중고 공제대상금액	0
대학생 공제대상금액	0
공제대상금액	0
세액공제	0

계산하기 적용하기 닫기

51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단위:원)				
구분	공제대상금액	적용률	세액공제	사업자등록번호
주택자금차입금 이자상환세액공제 도움말				
월세액 세액공제 도움말				
전자신고 이월 세액공제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현금영수증발행세액공제				
성실사업자 의료비 세액공제 도움말				
성실사업자 교육비 세액공제 도움말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 도움말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합계			1,949,000	

월세액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능)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월세액

○ 공제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시 배제)

○ 세액공제 : 총급여 5천5백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포함)인자 공제율 17% (1,275,000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5% (1,125,000원 한도)
총급여 5천5백 초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포함)인자 공제율 15% (1,125,000원 한도)

52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① 기납부세액명세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증간예납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0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고지세액	0	
수시부과세액	0	0

② 원천징수세액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구분	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이자소득	0	
배당소득	0	
사업소득	0	0
근로소득	411,000	0
연금소득	0	
기타소득	80,000	
합계	491,000	0

[이전](#) [저장 후 다음이동](#)

53

그 외 소득이 있는 경우 (복수 소득자)

① 세액계산

[동영상\(세액계산\)](#) [화면도움말](#)

②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

종합소득세(33-34+35-36)	3,150,500
농어촌특별세(51-52)	0

※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합니다. (홀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종료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신고)

※ 소득세 주가납부세액, 납부특례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를 입력하시는 경우 [펼치기]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세액계산 보기\(펼치기\) ▾](#)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많이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알고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
가산세 부과 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이에 동의합니다.

※ 사전 작성된 항목 및 소득자료는 신고편의를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제출화면 이동](#)

54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55

55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종교인 소득 신고 방식과 관계없이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시기 (2022년 귀속 소득분)
 - 정기: 2023/5/1 ~ 5/31
 - 기한후: 2023/6/1 ~ 11/30
- 지급시기(2022년 귀속 소득분)
 - 정기: 9월말까지 지급
- 허위 신청시:
 - 고의, 중과실: 2년간 지급제한
 - 사기, 부정: 5년간 지급제한

56

56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자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단독가구: 2,200만원 (<=3~165만원 지급)
 - 홀벌이가구: 3,200만원 (<=3~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3,800만원 (<=3~33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단독가구: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
- 홀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배우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 가구요건: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을 것
- 소득기준: 부부합산소득 아래 금액 미만
 - 홀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80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4,000만원 (<=1인당 50~80만원 지급)
- 재산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홀벌이: 배우자(총 급여등이 3백만원 이하)나 부양자녀(18세미만)가 있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70세 이상 부모(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가 있는 경우
- 맞벌이: 배우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